

# 예 산 총 칙

2015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15,403,247	12,462,097
일반회계	366,296,490	10,988,895
특별회계	49,106,757	1,473,203
공기업특별회계	37,917,361	1,137,521
상수도공기업	15,330,663	459,920
하수도공기업	22,586,698	677,601
기타특별회계	11,189,396	335,682
의료급여기금운영	1,153,694	34,611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398,706	11,961
수질개선	553,215	16,596
농공지구조성사업	5,531,202	165,936
공영개발사업	431,134	12,93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79,955	8,399
주택사업	2,315,514	69,465
기반시설	17,475	524
장기미집행	508,501	15,255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 3,603,441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포함)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0,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